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10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연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단53565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는 소외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154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154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의 “236,163,585원”을 모두 “236,163,586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의 “사해해위의”를 “사해행위의”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피고와 피고 아버지인 D에게 숨긴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D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나 D이 C의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C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이에 D은 위 증여를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피고 명의로 이전된 것은 D의 위 증여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C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와 C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으로부터 증여받은 2018. 7. 19.경까지 부부 사이로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C이 원고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와 2018. 7. 1.부터 2018. 8. 26.까지 수회에 걸쳐 C의 횡령에 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피고 및 피고의 아버지인 D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나 D이 C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항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C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부동산의 표시

1. 광주 남구 대 166㎡ 중 1/2

2. 위 지상의 아래 기재 건물 중 1/2

[도로명 주소 광주 남구]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1.13㎡

2층 53.81㎡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2.42㎡

